제770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신설)사업분야 및 규모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대상 정보보호 공시 이행 의무화	1.비중요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자본금 요건(강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자본금 요건 강화(부산항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2.수리 조선소 경비,검색인력 기준 강화(강화)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 보안사건이 발생했거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이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소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날로부터 2년간 제1호에 따른 경비·검색인력 2명 이상을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	1.비중요 2.비중요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기타 일회성금융거래의 기준 강화(강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을 1천만원으로 함 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신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대상·기준·방법,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 등을 규정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신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요건 및 공개	
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경찰청)	1.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 경찰 채용 신체검사 중 문신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1.비중요
5	도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음주 도선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강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취소로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 취소	1.비중요
6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1.퇴직공직자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신설)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별도로 봄)으로 정함. -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 등은 제외함. 2.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 시 통보·공고방법 구체화(신설) ○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관세청장은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소 및 명칭 등의 사항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세사회는 일정기간동안 홈페이지에 공개	1.중요 2.비중요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강화)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시행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 -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설치(2개 이상) -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설치 금지. 다만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3층 이상 설치 가능 - 입원실 면적을 1인실 6.3㎡, 다인실 4.3㎡에서 10㎡, 6.3㎡로 각각 변경 - 입원실 병상 수를 10명 이하에서 최대 6병상으로 함 - 입원실 이격거리를 최소 1.5m이상으로 함 -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화장실 설치 - 300개 이상 병상인 정신의료기관은 격리병실 설치 - 진료실에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과 비상경보장치 설치 - 정신의료기관에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 설치 -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 2.보안전담인력 설치(강화) 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 - 100병상 이상인 정신병원 및 병원급 이상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는 보안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2.비중요
8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환경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평균연비 또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규정	
9	변호사법 개정안 (법무부)	1.연고관계 등 선전금지 대상 확대(강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와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됨 2.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기간을 공직자윤리법상 ① 재산공개대상자,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③ 그 외 공직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규정 - 재산공개대상자 : 퇴직 전 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 기관 처리 사건 퇴직한 날부터 3년간 수임제한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 기관 처리 사건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수임제한 - 그 외 : 현행 유지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자료 제출기간 연장(강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함	
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정비명령 이행기간 단축(강화)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단축(6개월 → 1개월) 2.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단축(강화) ○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항타 및 항발기 1년, 터널용 고소작업차 1년 등) 3.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시설보유기준 강화(강화)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시설보유기준(비파괴시험장비 포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환경부)	1.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도 변경(강화) 보험 가입기간 1년 단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범위 허용보과량의 2배, 보증보험의 경우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보험금은 5배	1.비중요
1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1.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의무자 지정(신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인지시 신고 의무 부과 2.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신설)	1.비중요 2.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선수관리 담당자 자격 요건 명시	
13	해산된 학교법인등의 기록물 제출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교육부)	1.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규정(신설)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를 정함	1.비중요
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추가(신설)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서 제조한 건축자재에 대해 방출시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2.지하역사 내 표출 장치 설치(신설) 지하역사 승강장, 대합실 등 이용객이 많은 공간에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표출하는 장치를 1대 이상 설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1.비중요 2.비중요
1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확대(강화) ○ 농어촌민박시설 및 전기차충전시설을 여러사람이용시설 안전점검대상에 포함 2.정보공개의 범위(신설) ○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전기설비 현황,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정보공개 범위에 포함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요건(강화) ㅇ 시설물관리업체의 등록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신설 및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안전장구를 등록요건에 포함	
16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안 (환경부)	1.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석탄재 재활용 목표율 강화(강화)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석탄재를 배출한 연도의 배출량 대비 90%를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1.비중요